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4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II . 검토의견	2
1.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제 적용기한 연장(강명구의원안, 나경원의원안, 문금주의원안) ..	2

I. 개 요

1.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44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20.

(3) 회 부 일 : 2025. 11.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됨.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II. 검토의견

1.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강명구의원안, 나경원의원안, 문금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제5호)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제6호) ○ 적용기한 - 제5호: <u>2028년 12월 31일</u> - 제6호: <u>2028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제5호 · <u>2028년 12월 31일(나경원의원안)</u> · <u>2029년 12월 31일(문금주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강명구의원안)</u> - 제6호 · <u>2028년 12월 31일(나경원의원안)</u> · <u>2029년 12월 31일(문금주의원안)</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2항) ○ 면제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제9호)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나경원의원안)</u> - <u>2029년 12월 31일(문금주의원안)</u>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강명구의원안 2025. 11. 20. 발의(의안번호 14441), 나경원의원안 2025. 11. 21. 발의(의안번호 14479), 문금주의원안 2025. 12. 2. 발의(의안번호 14784)

□ 3건의 개정안은 2028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이하 “농어업용 기자재 등” 이라 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강명구의원안은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제105조제1항제5호)이며, 나경원의원안·문금주의원안은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제105조제1항제6호)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제106조제2항)하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동 특례제도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개정안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농어민 등에 대한 계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임.

□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1)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비료, 농약,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양돈케이지·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어망·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등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른 2026년 감면세액은 2조 2,602억 원으로 전망됨.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6년 감면 세액은 20억 원으로 전망됨.

[농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의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영 세 율	18,481	21,886	23,047	22,266	21,916	22,602
수입면세	34	46	24	23	19	20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의 비율은 2024년의 경우 96.2%,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8% 수준으로 집계됨.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축산·임업용 (제105조제1항제5호)	95.8	95.8	96.0	95.8	96.4	96.2
어업용 (제105조제1항제6호)	4.2	4.0	4.2	3.6	3.3	3.8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7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므로,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2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4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²⁾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4천 가구, 어가는 4만 1천 가구(내수면 제외), 임가는 9만 8천 가구로 전년 대비 농가(△2.5%), 어가(△2.1%), 임가(△1.2%) 모두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 임가 56.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농어민이 기자재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타당성 및 효과성이 확보되나 기자재 사용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료와 사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문제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농어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소규모·영세 농어민은 기자재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아 대규모 농어민과 소규모 농어민 간의 세제 혜택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둘째,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³⁾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2029

3)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년 4년간 총 9조 9,125억원(연평균 2조 4,7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또한,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2029년 4년간 총 111억원(연평균 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영세율	△24,141	△25,137	△26,175	△27,256	△99,014	△24,754
수입면세	△28	△28	△28	△28	△111	△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만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2030년 총 12조 6,416억원(연평균 2조 5,2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농·축산·임업용	△23,250	△24,225	△25,241	△26,299	△27,402	△126,416	△25,2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용기한을 당장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추후 조세특례의 성과, 지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147